|  |  |  |
| --- | --- | --- |
|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2014. 12. 1)  (주석령 제13호, 공포 2014.8.31.)  **제1장 총칙**  제1조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방지․감소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장(이하 “생산경영 사업장”라 한다)의 안전생산은 이 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가 소방안전과 도로교통 안전, 철도교통 안전, 수상교통 안전, 민용항공 안전 및 핵과 복사 안전, 특수설비 안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안전생산 업무는 사람을 근본으로 하여 안전발전을 견지하여야 하고, 안전제일, 예방위주, 종합관리 방침을 견지하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현하며, 생산경영 사업장의 책임, 근로자의 참여, 정부의 관리감독, 업계 자율과 사회의 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4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이 법과 기타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며, 안전생산 책임제도와 안전생산 규장제도를 구축․보완하고, 안전생산 여건을 개선하며, 안전생산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제고하여 안전생산을 확보한다.  제5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생산 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진다.  제6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종사자는 법에 의하여 안전생산 보장을 확보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법에 따라 안전생산 방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의 민주적 관리와 감독에 참가하며, 안전생산 방면에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관련 규장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따라 안전생산 계획을 제정, 조직,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계획은 성향(城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각 관련 부문이 법에 의해 안선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독려하여야 하며 안전생산 업무 조정 시스템을 만들어 안전생산 관리감독상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향, 진 인민정부와 가도 판사처, 개발구 관리기구 등 지방 인민정부의 파견기관은 직책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 내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법에 따른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한다.  제9조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이 법에 따라 전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이 법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내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내 관련 업계, 영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내 관련 업계, 영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와 관련 업계, 영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부서는 통일적으로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라 한다.  제10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 보장의 필요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적시에 제정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발전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수정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법에 의하여 제정된 안전생산 보장에 대한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와 안전생산 지식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전 사회적인 안전생산 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련 협회는 법률, 행정법규와 장정에 따라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해 안전생산 방면의 정보와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 작용을 발휘하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 강화를 촉진한다.  제13조 법에 의해 설립된 안전생산을 위하여 기술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와 작업집행준책에 따라 생산경영 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그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에 기술서비스와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이 앞의 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동 기관이 안전생산 기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안전생산에 대한 보증 책임은 여전히 해당 사업장이 부담한다.  제14조 국가는 안전생산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제도를 실시하고, 이 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 사고 책임자에 대한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15조 국가는 안전생산 과학기술 연구와 안전생산 선진기술의 응용보급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안전생산수준을 제고한다.  제16조 국가는 안전생산 여건의 개선, 안전생산 사고의 방지, 응급구호 참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한다.  **제2장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보장**  제17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이 법과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8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사업장의 안전생산책임제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2.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조작규정을 조직하여 제정한다.  3. 사업장의 안전생산 교육훈련 계획을 조직하여 제정하고 실시한다.  4. 사업장의 안전생산 투입에 대한 효력있는 실시를 보증한다.  5.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를 촉구, 검사하고, 생산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生産安全事故隱患)를 적시에 제거한다.  6. 사업장의 생산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응급구조 예비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7. 생산안전 사고를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한다.  제19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책임제는 각 직위의 책임인원, 책임범위와 심사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상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생산책임제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심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의 실시를 보증해야 한다.  제20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구비하여야 하는 안전생산조건에 소요되는 자금투입은 생산경영 사업장의 결정기구, 주요책임자 또는 개인경영 투자자가 보증하고, 동시에 안전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의 투입부족이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관련 생산경영 사업장은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안전생산조건의 개선에만 사용해야 한다. 안전생산 비용은 자본금(成本)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지출해야 한다. 안전생산 비용의 인출, 사용과 관리감독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에서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제정한다.  제21조 광산, 금속제련, 건축시공, 도로운수 사업장과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사업장은 안전생산 관리기구 또는 전문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앞의 항 규정이외의 기타 생산경영 사업장은 종사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기구 또는 전임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종사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임 또는 겸임의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어야한다.  제22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 조작규정과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의 입안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2. 사업장의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안전생산 교육훈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3. 사업장의 중대한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실시를 촉구한다.  4. 사업장의 응급구조 연습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5. 사업장의 안전생산 상황을 검사하고, 생산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제거하며, 안전생산 관리 개선을 위해 건의를 한다.  6. 규정에 위반된 지휘, 위험한 작업 강제명령, 조작규정 위반행위를 제지하고 바로잡는다.  7. 사업장의 안전생산 정리개혁 조치 실시를 촉구한다.  제23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자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 관리자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한 것을 이유로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하는 사업장 및 광산, 금속제련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자의 임면은 안전생산 관리감독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24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생산경영활동과 상응하는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사업장 및 광산, 건축시공 사업장의 주요책임자 및 안전생산 관리자는 관련 주관부서의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능력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후에야 직무에 임명될 수 있다. 심사는 무료이다.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하는 사업장 및 광산, 금속제련 사업장은 등록된 안전공정사를 안전생산 관리업무에 종사토록 하여야 한다. 기타 생산경영 사업장에서는 등록된 안전공정사를 채용하여 안전생산 관리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것을 장려한다. 등록된 안전공정사는 전문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국무원 안전생산관리감독부서가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25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종사자가 필요한 안전생산 지식을 갖추도록 보증한다. 관련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안전조작 규정을 상세히 알도록 하고, 해당 직위의 안전조작 기능에 정통하도록 하며, 사고시 응급처리 조치를 이해하고, 안전생산 방면에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한다.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는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직위의 안전조작 규정과 안전조작 기능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노무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이 중등직업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실습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실습학생에게 상응한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노동방호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는 생산경영 사업장과 협조하여 실습학생에 대한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 교육훈련 서류를 만들어 안전생산 교육훈련의 시간, 내용, 참가인원 및 심사결과 등의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신공법, 신기술, 신재료를 채택하거나 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효과적인 안전방호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7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특수작업 종사자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안전작업훈련을 받고, 상응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특수작업 종사자의 범위는 국무원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가 국무원의 관련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제28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공정항목(工程项目, 이하 “건설항목”이라 한다)의 안전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요 공정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하여야 한다. 안전시설투자는 건설항목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건설항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건설항목 안전시설의 설계사, 설계기관(업체)는 안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건설항목의 안전시설 설계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련부서의 심사를 거치고, 심사부문 및 그 심사책임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1조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의 생산, 저장, 하역하는 건설항목의 시공 사업자는 반드시 비준된 안전시설설계에 의하여 시공하고, 동시에 안전시설의 공정품질에 대하여 책임진다.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사용, 저장하는 건설항목은 준공하여 가동 혹은 사용 전에 반드시 건설 사업장 책임조직이 안전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에 합격한 후에 생산에 투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건설 사업장 검수활동과 검수결과에 대하여 감독 및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2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위험요소가 큰 생산경영 장소와 관련시설, 설비에 분명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측정검사, 유지보수, 개조와 폐기는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와 정비와 함께 정기검사를 하여 정상 가동을 보증하여야 한다. 보호, 정비 및 측정검사는 기록을 남기고, 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위험물품의 용기, 운송기기 및 신체안전에 관계되고 위험성이 큰 해양석유 채굴 특수 설비와 광산 갱내 특수설비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전문 생산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동시에 전문적인 측정검사를 통하여 검증기관이 측정검사하고, 검증에 합격하여 안전사용증서 또는 안전표시를 취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측정검사, 검증기관은 측정검사, 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5조 국가는 생산안전에 엄중한 위험을 야기하는 공법, 설비에 대한 퇴출제도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가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공표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목록의 제정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목록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앞의 항 규정 이외의 생산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공법, 설비에 대해 퇴출시킬 수 있다.  생산경영 사업자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는 생산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공법,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6조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수, 저장, 사용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주관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따라 심사․허가하고, 동시에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생산경영 사업주가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수, 저장, 사용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며, 믿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감독을 받는다.  제37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중대한 위험(危险源)에 대하여 서류를 만들어 등기하고, 정기 측정검사, 평가, 감독 제어를 실시하며, 동시에 응급예비안을 마련하여 종사자와 관련자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를 알려준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중대한 위험 및 관련 안전조치, 응급조치를 지방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생산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조사, 처리(排査治理)제도를 만들고, 기술, 관리조치를 채택하여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의 잠재적 문제 조사, 처리 상황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하며,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반드시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 처리 감독제도를 만들어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제거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제39조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근로자 기숙사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동시에 근로자 기숙사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장소와 근로자 기숙사는 긴급 대피가 가능하고, 분명한 표시가 있으며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장소 또는 근로자 기숙사 출구를 잠그고, 막는(鎖閉, 封堵) 행위를 금지한다.  제40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폭파, 중장비를 이용한 조립 및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위험작업은 반드시 전문가를 배치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조작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생산경영 사업자는 종사자가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안전조작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교육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동시에 종사자에게 작업장소와 직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방범조치 및 사고응급조치를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는 노동방호용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동시에 종사자가 사용규칙에 의하여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3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자는 사업장의 생산경영 특성에 근거하여 안전생산 상황에 대하여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중에 발견되는 안전문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장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책임자는 반드시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검사 및 처리상황은 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자는 검사 중에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앞의 항 조항에 따라 사업장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책임자가 적시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자는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부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노동보호용품 구비와 안전생산 훈련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45조 2개 이상의 생산경영 사업이 동일한 작업 구역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생산안전에 위험이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생산 관리직책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전임 안전생산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검사와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생산경영 항목, 장소, 설비를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진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  생산경영 항목, 장소를 다른 사업주에게 하청이나 임대를 준 생산경영 사업주는 반드시 도급 및 임차사업자와 전문적인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거나 도급계약, 임대계약 중 각자의 안전생산 관리직책을 약정한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도급 및 임차사업자의 안전생산 작업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조정, 관리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하며,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적시에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47조 생산경영 사업장에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조직적인 구조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조사처리기간에 임의로 직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48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종사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는 생산경영 사업주가 안전생산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장 종사자의 안전생산 권리와 의무**  제49조 생산경영 사업주와 종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종사자의 노동안전을 보장하고 직업위해를 방지하는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고, 아울러 법에 따라 종사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와 어떠한 형식으로 협의를 체결하더라도 종사자의 생산안전사고 사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아니한다.  제50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종사자는 그 작업장소와 직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방범조치 및 사고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51조 종사자는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 중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비평,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와 위험작업을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 사업자는 종사자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에 비평, 고발, 고소를 제기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 위험작업의 강제적인 명령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52조 종사자가 신체안전에 직접 위험을 미치는 긴급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작업을 정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소를 이탈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가 앞의 항의 긴급상황 하에서 작업을 정지하거나 긴급 이탈조치를 취한 것을 이유로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53조 생산안전사고로 손해를 입은 종사자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 대우를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률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4조 종사자는 작업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조작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보호용품을 정확히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55조 종사자는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받고, 직무에 필요한 안전생산 지식을 잘 파악하며, 안전생산 기능을 제고하여 사고예방과 응급처리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6조 종사자는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 또는 기타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현장의 안전생산 관리자 또는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담당자는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 노동조합은 건설항목에서 주요공정과 안전시설의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생산과 사용에 대하여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은 생산경영 사업주가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종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 사업주의 규정에 위반된 지휘 및 위험작업에 대한 강제적 명령 ,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결책을 건의할 권리가 있고, 생산경영 사업주는 적시에 연구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종사자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주에게 종사자들을 위험장소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고, 생산경영 사업주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참가하고,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을 제기하며,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8조 생산경영 사업주가 파견된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에 파견노동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권리를 획득하고, 아울러 반드시 이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생산 관리감독**  제59조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내의 안전생산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직책에 따라 행정구역 내 중대 생산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등급별 관리감독 요구에 따라 연간 안전생산 감독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감독검사 계획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발견하면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0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과 관계되는 사항이 심사 비준(비준, 심사 비준, 허가, 등록, 인증, 증명서 교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심사한다.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비준을 하거나 검수를 통과시킬 수 없다. 법에 의하여 비준 또는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사업자가 임의로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행정심사비준을 책임진 부서가 발견하거나 고발을 받은 후에 즉시 단속을 하고, 동시에 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미 법에 따라 비준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심사비준을 책임진 부서가 안전생산조건을 재차 구비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래의 비준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1조 안전생산 관리감독관리 책임부서는 안전생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검수의 실시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심사와 검수를 받는 사업자에게 특정 브랜드 또는 특정 생산, 판매 사업자의 안전설비, 기자재 또는 기타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62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와 기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 행정집행 업무를 실시하고, 생산경영 사업장이 안전생산의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집행하는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생산경영 사업장에 진입,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며, 관련 기관과 인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다.  2. 검사 중에 발견한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시정 또는 기한내 시정을 명령한다.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부과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벌의 결정을 한다.  3. 검사 중에 발견한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제거하기 전 또는 제거 과정 중에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구역에서 작업자를 철수하도록 명령하고, 잠시 휴업하거나 사용정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제거한 후 심사동의를 거쳐야 생산경영과 사용을 회복할 수 있다.  4.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 시설, 설비, 기자재 및 위법하게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송되는 위험물품에 대해서는 차압하거나 압수하고, 위법하게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 사용, 경영하는 작업장소는 차압하고 법에 따라 처리를 결정한다.  감독․검사는 피검사 사업장의 정상적 생산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3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의 감독검사자(이하 “안전생산 감독검사자”라 한다)가 법에 따라 감독검사 직책을 이행하는 경우에 협력하여야 하고, 거절이나 방해할 수 없다.  제64조 안전생산감독 검사자는 직무수행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지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검사자는 감독검사 임무 집행시 유효한 감독 법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검사 사업장과 관계되는 기술적 비밀과 업무상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65조 안전생산 감독검사자는 검사 시간, 장소, 내용, 발견한 문제 및 그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검사자와 피검사 사업장의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피검사 사업장의 책임자가 서명을 거절할 경우에는 검사자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 부서는 감독검사 중 상호 협력하여 연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확실히 필요하여 따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상호 통보하고, 발견한 안전문제를 기타 관련 부서가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시에 기타 관련 부서에 이송하고, 동시에 검사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부서는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가 있는 사업경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련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 생산정지, 휴업, 시공정지, 사용정지 결정을 내리고, 생산경영 사업장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집행하고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제거해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이 집행을 거절하고 생산안전 사고의 현실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 보증의 전제하에 해당 부서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전기공급 정지, 민용폭발물품 공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해 이행결정을 강제한다. 통지는 반드시 서면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은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앞의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급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생산안전을 위협하는 긴급상황 외에는 반드시 생산경영 사업장에 24시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이행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제거하는 경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적시에 앞의 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8조 감찰기관은 행정감찰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 관라감독 책임부서 및 그 직원의 안전생산 감찰직책의 이행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한다.  제69조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을 책임지는 기관은 국가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동시에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70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신고제도를 구축하고, 신고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주소를 공개하여 안전생산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다. 접수한 신고사항은 조사, 확인 후 서면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비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에 보고하여 서명을 받고, 동시에 실시를 독촉한다.  제71조 모든 사업장 또는 개인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된 문제 또는 안전생산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에 보고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72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소재지역내의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의 잠재된 문제 또는 안전생산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보고하거나 안전생산위법행위를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공을 세운 자를 장려한다. 구체적인 장려방법은 국무원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가 국무원의 재정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74조 뉴스, 출판, 방송, 영화, TV 등의 매체는 안전생산 공익선전, 교육할 의무가 있고, 안전생산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75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반드시 안전생산 위법행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위법행위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위법행위 내용이 엄중한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회에 공표하며, 업종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 국토자원주관부서, 증권관리감독기관 및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생산사고의 응급구조와 조사처리**  제76조 국가는 생산안전사고 응급능력 건설과 중점 업종, 영역에서의 응급구조 기지와 응급구조 대오 건립을 강화하고, 생산경영 사업장과 기타 사회역량의 응급구조 대오 건립을 격려하며, 상응한 구조 설비와 물자를 배치하고, 응급구조의 전문화 수준을 제고한다.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업종, 영역에서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정보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다.  제77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행정구역내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을 마련하고,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8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을 제정하여,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조직, 제정한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과 연계시키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79조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 사업체 및 광산, 금속제련, 도시철도교통운영, 건축시공 사업장은 응급구조 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규모가 작아 응급구조 조직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겸직의 응급구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 운송 사업장 및 광산, 금속제련, 도시철도교통운영, 건축시공 사업장은 필요한 응급구조 기자재와 설비, 물자를 마련하고, 일상적인 보호, 정비를 실시하여 정상 가동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80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고현장의 관련자는 즉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장 책임자는 사고보고를 받은 후에 신속히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를 조직하여 사고확대를 방지하고 사상자와 재산손실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그 지역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에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하며,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연 보고해서는 안된다. 또한, 고의로 사고현장을 파괴하거나 관련증거를 없애서는 안된다.  제81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국가 관련규정에 의하여 즉시 사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와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사고상황에 대하여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연 보고해서는 안된다.  제82조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의 책임자는 생산안전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안전생산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에 따라 즉시 사고현장에 가서 사고구조를 조직하여야 한다.  사고구조에 참여한 부서와 기관은 반드시 통일된 지휘에 복종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유효한 응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구조의 필요에 따라 경계, 분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확대와 2차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며, 사상자와 재산손실을 줄여야 한다.  사고구조 과정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모든 단체와 개인은 모두 사고구조에 지원과 협력을 하고, 모든 편의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3조 사고 조사처리는 과학적 치밀성, 법률법규 의존성, 실사구시, 실효성 치중 원칙에 따라 적시에 정확히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사고의 성질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고 교훈을 총정리하며, 정리개혁 조치를 제출하고,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조사 보고는 법에 따라 적시에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사고 조사와 처리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사고발생 사업장은 반드시 적시에 전면적인 정리개혁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반드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84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조사결과 책임사고로 확정된 경우에는, 사고 사업장의 책임을 명확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추궁을 하는 외에, 안전생산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사 비준과 감독 직책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서의 책임도 명확히 조사하여 실책, 독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85조 어떤 단체와 개인도 사고에 대하여 법에 따른 조사처리에 지장을 주거나 간섭할 수 없다.  제86조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에서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정기적으로 해당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안전 사고상황을 정기적으로 통계분석하고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87조 안전생산 관리감독관리 책임부서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직위해제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안전생산에 관계되는 사항을 비준하거나 검수를 통과시킨 경우  2. 법에 따라 비준, 검수를 받지 못한 사업장이 임의로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접수한 후 단속 또는 법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에 따라 이미 비준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음에도 원래의 비준을 취소하지 않거나 안전생산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감독검사 중에 발견한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 직원이 앞의 항 규정 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8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가 심사․검수를 받는 사업주에게 지정된 안전설비, 기자재 또는 기타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안전생산 사항의 심사․검수 중에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받은 비용을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내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89조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작업을 책임지는 기관이 가짜 증명을 발급하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것에 병행하여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병행하여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주와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앞의 항의 위법행위가 있는 기관은 그에 상응한 자격을 취소(弔銷)한다.  제90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결정기구, 주요 책임자 또는 개인경영 투자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하여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앞의 항의 위법행위로 생산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한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를 직위해제 처분하고, 개인경영 투자자에 대하여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1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이 법이 규정한 안전생산 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장에 대하여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앞의 항의 위법행위로 생산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앞의 항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또는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에는 형벌이 완료되거나 처벌을 받는 날로부터 5년 내에는 모든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 직위를 담당할 수 없다. 중대, 특별중대 생산안전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 그 업종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 직위를 담당할 수 없다.  제92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이 법의 안전생산 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생산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1. 일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년 수입 30%의 벌금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년 수입 40%의 벌금  3.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년 수입 60%의 벌금  4. 특별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년 수입 80%의 벌금  제93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자가 이 법에서 규정한 안전생산 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생산안전사고의 발생을 초래한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련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4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구 또는 안전생산 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사업장 및 광산, 금속제련, 건축시공, 도로운수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종사자, 파견노동자, 실습학생에게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4. 사실대로 안전생산 교육훈련 상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5.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의 조사,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종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을 제정하지 않거나, 정기적 훈련을 조직하지 아니한 경우  7. 특수작업 종사자가 규정에 따라 전문 안전작업훈련을 거쳐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종사한 경우  제95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정지 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에 따라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 또는 위험물품의 생산, 저장, 하역 등 건설항목에 안전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 또는 위험물품 생산, 저장, 하역 건설항목에 안전시설 설계가 없거나, 안전시설 설계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 또는 위험물품 생산, 저장, 하역 건설항목의 시공 사업자가 비준된 안전시설 설계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 또는 위험물품 생산, 저장 건설항목을 준공하여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안전시설이 검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제96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이 엄중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요소가 비교적 큰 생산경영 장소와 관련 시설, 설비에 분명한 안전경고표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설비의 설치, 사용, 측정검사, 개조와 폐기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 정비와 정기적 측정검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종사자에게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는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위험물품의 용기, 운송도구 및 신체안전에 영향을 주고 위험성이 비교적 큰 해양석유 채굴 특수설비와 광산 갱내 특수설비가 전문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측정검사, 검수에 통과되지 아니하고, 안전사용증 또는 안전표시를 획득하지 아니한 채 사용에 투입한 경우  6.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는 생산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공법,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97조 법에 따라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송, 저장, 사용하거나 처리, 폐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 안전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8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송, 저장, 사용하거나 처리, 폐기할 때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믿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위험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 등기하지 아니하거나, 평가, 감시통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예비안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  3. 폭파, 조립 및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에 전문 관리자가 현장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조사, 처리 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이 거절하고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 생산경영 사업주가 생산경영 항목, 장소, 설비를 안전생산조건이 미비하거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병행하여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병행하여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산안전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도급사업자와 임차사업자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생산경영 사업주가 도급사업자와 임차사업자 간에 전문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계약, 임차계약에 각자의 안전생산 관리직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사업자와 임차사업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통일조정과 관리를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제101조 2개 이상의 생산경영 사업주가 동일 작업 구역 내에서 상대방의 안전생산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생산경영활동을 실시하고,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전문 안전생산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검사와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을 명령한다.  제102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가 근로자 기숙사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거나 근로자 기숙사와의 거리가 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생산경영 장소와 근로자 기숙사가 긴급 대피 수요, 분명한 표시 및 원활한 왕래 유지에 부합하는 출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생산경영 장소 또는 근로자 기숙사 출구를 잠그고, 막는 경우  제103조 생산경영 사업주가 종사자와 협의를 체결하여 안전생산사고에 따른 사상으로 인한 종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한 경우에 그 협의는 무효로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 개인경영 투자자에 대하여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종사자가 관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생산 규칙제도 또는 조작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주는 비판교육하고, 관련 규칙제도에 의하여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경영 사업주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거절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6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조사처리기간에 임의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도주하여 행방을 감추는 경우에는 강등, 직위해제 처분을 하며, 동시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1년 수입의 60%에서 100%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도주하여 행방을 감추는 자는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책임자가 생산안전 사고를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지연 보고 하였을 경우에는 앞의 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07조 관련 지방 인민정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가 생산안전사고를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지연 보고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8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이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여도 여전히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쇄한다.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면허를 취소한다.  제109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해서 법에 따라 상응한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외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1. 일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3.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4. 특별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내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00만 위안 이상 2,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제110조 이 법이 규정한 행정처벌은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와 기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 부서가 분장된 직책에 따라 결정한다. 폐쇄의 행정처벌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 구류의 행정처벌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111조 생산경영 사업장에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원의 사상, 타인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부담을 거절하거나 책임자가 도망쳐 행방을 감춘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한다.  생산안전사고 책임자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책임자에게 기타 재산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11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품”이란 연소와 폭발이 용이한 물품, 위험화학품, 방사성물품 등 신체안전과 재산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중대한 위험(重大危险源)”이란 장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위험물품을 생산, 운반, 사용 또는 저장하는 동시에 위험물품의 수량 등이 임계수량의 단위(장소와 시설을 포함한다)와 같거나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13조 이 법이 규정한 생산안전 일반사고, 비교적 큰 사고, 중대사고, 특별중대사고에 대한 구분 기준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와 기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각자 분장된 직책에 따라 관련 업계, 영역의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판정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14조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2014.12.1)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十三号,  公布 2014.8.31)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安全生产工作，防止和减少生产安全事故，保障人民群众生命和财产安全，促进经济社会持续健康发展，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单位（以下统称生产经营单位）的安全生产，适用本法；有关法律、行政法规对消防安全和道路交通安全、铁路交通安全、水上交通安全、民用航空安全以及核与辐射安全、特种设备安全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第三条 安全生产工作应当以人为本，坚持安全发展，坚持安全第一、预防为主、综合治理的方针，强化和落实生产经营单位的主体责任，建立生产经营单位负责、职工参与、政府监管、行业自律和社会监督的机制。  第四条 生产经营单位必须遵守本法和其他有关安全生产的法律、法规，加强安全生产管理，建立、健全安全生产责任制和安全生产规章制度，改善安全生产条件，推进安全生产标准化建设，提高安全生产水平，确保安全生产。  第五条 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对本单位的安全生产工作全面负责。  第六条 生产经营单位的从业人员有依法获得安全生产保障的权利，并应当依法履行安全生产方面的义务。  第七条 工会依法对安全生产工作进行监督。  生产经营单位的工会依法组织职工参加本单位安全生产工作的民主管理和民主监督，维护职工在安全生产方面的合法权益。生产经营单位制定或者修改有关安全生产的规章制度，应当听取工会的意见。  第八条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制定安全生产规划，并组织实施。安全生产规划应当与城乡规划相衔接。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安全生产工作的领导，支持、督促各有关部门依法履行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建立健全安全生产工作协调机制，及时协调、解决安全生产监督管理中存在的重大问题。  乡、镇人民政府以及街道办事处、开发区管理机构等地方人民政府的派出机关应当按照职责，加强对本行政区域内生产经营单位安全生产状况的监督检查，协助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依法履行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  第九条 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照本法，对全国安全生产工作实施综合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照本法，对本行政区域内安全生产工作实施综合监督管理。  国务院有关部门依照本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在各自的职责范围内对有关行业、领域的安全生产工作实施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本法和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在各自的职责范围内对有关行业、领域的安全生产工作实施监督管理。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对有关行业、领域的安全生产工作实施监督管理的部门，统称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  第十条 国务院有关部门应当按照保障安全生产的要求，依法及时制定有关的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并根据科技进步和经济发展适时修订。  生产经营单位必须执行依法制定的保障安全生产的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  第十一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采取多种形式，加强对有关安全生产的法律、法规和安全生产知识的宣传，增强全社会的安全生产意识。  第十二条 有关协会组织依照法律、行政法规和章程，为生产经营单位提供安全生产方面的信息、培训等服务，发挥自律作用，促进生产经营单位加强安全生产管理。  第十三条 依法设立的为安全生产提供技术、管理服务的机构，依照法律、行政法规和执业准则，接受生产经营单位的委托为其安全生产工作提供技术、管理服务。  生产经营单位委托前款规定的机构提供安全生产技术、管理服务的，保证安全生产的责任仍由本单位负责。  第十四条 国家实行生产安全事故责任追究制度，依照本法和有关法律、法规的规定，追究生产安全事故责任人员的法律责任。  第十五条 国家鼓励和支持安全生产科学技术研究和安全生产先进技术的推广应用，提高安全生产水平。  第十六条 国家对在改善安全生产条件、防止生产安全事故、参加抢险救护等方面取得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第二章 生产经营单位的安全生产保障  第十七条 生产经营单位应当具备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规定的安全生产条件；不具备安全生产条件的，不得从事生产经营活动。  第十八条 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对本单位安全生产工作负有下列职责：  （一）建立、健全本单位安全生产责任制；  （二）组织制定本单位安全生产规章制度和操作规程；  （三）组织制定并实施本单位安全生产教育和培训计划；  （四）保证本单位安全生产投入的有效实施；  （五）督促、检查本单位的安全生产工作，及时消除生产安全事故隐患；  （六）组织制定并实施本单位的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  （七）及时、如实报告生产安全事故。  第十九条 生产经营单位的安全生产责任制应当明确各岗位的责任人员、责任范围和考核标准等内容。  生产经营单位应当建立相应的机制，加强对安全生产责任制落实情况的监督考核，保证安全生产责任制的落实。  第二十条 生产经营单位应当具备的安全生产条件所必需的资金投入，由生产经营单位的决策机构、主要负责人或者个人经营的投资人予以保证，并对由于安全生产所必需的资金投入不足导致的后果承担责任。  有关生产经营单位应当按照规定提取和使用安全生产费用，专门用于改善安全生产条件。安全生产费用在成本中据实列支。安全生产费用提取、使用和监督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征求国务院有关部门意见后制定。  第二十一条 矿山、金属冶炼、建筑施工、道路运输单位和危险物品的生产、经营、储存单位，应当设置安全生产管理机构或者配备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  前款规定以外的其他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超过一百人的，应当设置安全生产管理机构或者配备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从业人员在一百人以下的，应当配备专职或者兼职的安全生产管理人员。  第二十二条 生产经营单位的安全生产管理机构以及安全生产管理人员履行下列职责：  （一）组织或者参与拟订本单位安全生产规章制度、操作规程和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  （二）组织或者参与本单位安全生产教育和培训，如实记录安全生产教育和培训情况；  （三）督促落实本单位重大危险源的安全管理措施；  （四）组织或者参与本单位应急救援演练；  （五）检查本单位的安全生产状况，及时排查生产安全事故隐患，提出改进安全生产管理的建议；  （六）制止和纠正违章指挥、强令冒险作业、违反操作规程的行为；  （七）督促落实本单位安全生产整改措施。  第二十三条 生产经营单位的安全生产管理机构以及安全生产管理人员应当恪尽职守，依法履行职责。  生产经营单位作出涉及安全生产的经营决策，应当听取安全生产管理机构以及安全生产管理人员的意见。  生产经营单位不得因安全生产管理人员依法履行职责而降低其工资、福利等待遇或者解除与其订立的劳动合同。  危险物品的生产、储存单位以及矿山、金属冶炼单位的安全生产管理人员的任免，应当告知主管的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  第二十四条 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和安全生产管理人员必须具备与本单位所从事的生产经营活动相应的安全生产知识和管理能力。  危险物品的生产、经营、储存单位以及矿山、金属冶炼、建筑施工、道路运输单位的主要负责人和安全生产管理人员，应当由主管的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对其安全生产知识和管理能力考核合格。考核不得收费。  危险物品的生产、储存单位以及矿山、金属冶炼单位应当有注册安全工程师从事安全生产管理工作。鼓励其他生产经营单位聘用注册安全工程师从事安全生产管理工作。注册安全工程师按专业分类管理，具体办法由国务院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门、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第二十五条 生产经营单位应当对从业人员进行安全生产教育和培训，保证从业人员具备必要的安全生产知识，熟悉有关的安全生产规章制度和安全操作规程，掌握本岗位的安全操作技能，了解事故应急处理措施，知悉自身在安全生产方面的权利和义务。未经安全生产教育和培训合格的从业人员，不得上岗作业。  生产经营单位使用被派遣劳动者的，应当将被派遣劳动者纳入本单位从业人员统一管理，对被派遣劳动者进行岗位安全操作规程和安全操作技能的教育和培训。劳务派遣单位应当对被派遣劳动者进行必要的安全生产教育和培训。  生产经营单位接收中等职业学校、高等学校学生实习的，应当对实习学生进行相应的安全生产教育和培训，提供必要的劳动防护用品。学校应当协助生产经营单位对实习学生进行安全生产教育和培训。  生产经营单位应当建立安全生产教育和培训档案，如实记录安全生产教育和培训的时间、内容、参加人员以及考核结果等情况。  第二十六条 生产经营单位采用新工艺、新技术、新材料或者使用新设备，必须了解、掌握其安全技术特性，采取有效的安全防护措施，并对从业人员进行专门的安全生产教育和培训。  第二十七条 生产经营单位的特种作业人员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经专门的安全作业培训，取得相应资格，方可上岗作业。  特种作业人员的范围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确定。  第二十八条 生产经营单位新建、改建、扩建工程项目（以下统称建设项目）的安全设施，必须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生产和使用。安全设施投资应当纳入建设项目概算。  第二十九条 矿山、金属冶炼建设项目和用于生产、储存、装卸危险物品的建设项目，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安全评价。  第三十条 建设项目安全设施的设计人、设计单位应当对安全设施设计负责。  矿山、金属冶炼建设项目和用于生产、储存、装卸危险物品的建设项目的安全设施设计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报经有关部门审查，审查部门及其负责审查的人员对审查结果负责。  第三十一条 矿山、金属冶炼建设项目和用于生产、储存、装卸危险物品的建设项目的施工单位必须按照批准的安全设施设计施工，并对安全设施的工程质量负责。  矿山、金属冶炼建设项目和用于生产、储存危险物品的建设项目竣工投入生产或者使用前，应当由建设单位负责组织对安全设施进行验收；验收合格后，方可投入生产和使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对建设单位验收活动和验收结果的监督核查。  第三十二条 生产经营单位应当在有较大危险因素的生产经营场所和有关设施、设备上，设置明显的安全警示标志。  第三十三条 安全设备的设计、制造、安装、使用、检测、维修、改造和报废，应当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  生产经营单位必须对安全设备进行经常性维护、保养，并定期检测，保证正常运转。维护、保养、检测应当作好记录，并由有关人员签字。  第三十四条 生产经营单位使用的危险物品的容器、运输工具，以及涉及人身安全、危险性较大的海洋石油开采特种设备和矿山井下特种设备，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由专业生产单位生产，并经具有专业资质的检测、检验机构检测、检验合格，取得安全使用证或者安全标志，方可投入使用。检测、检验机构对检测、检验结果负责。  第三十五条 国家对严重危及生产安全的工艺、设备实行淘汰制度，具体目录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并公布。法律、行政法规对目录的制定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地区实际情况制定并公布具体目录，对前款规定以外的危及生产安全的工艺、设备予以淘汰。  生产经营单位不得使用应当淘汰的危及生产安全的工艺、设备。  第三十六条 生产、经营、运输、储存、使用危险物品或者处置废弃危险物品的，由有关主管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审批并实施监督管理。  生产经营单位生产、经营、运输、储存、使用危险物品或者处置废弃危险物品，必须执行有关法律、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建立专门的安全管理制度，采取可靠的安全措施，接受有关主管部门依法实施的监督管理。  第三十七条 生产经营单位对重大危险源应当登记建档，进行定期检测、评估、监控，并制定应急预案，告知从业人员和相关人员在紧急情况下应当采取的应急措施。  生产经营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将本单位重大危险源及有关安全措施、应急措施报有关地方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有关部门备案。  第三十八条 生产经营单位应当建立健全生产安全事故隐患排查治理制度，采取技术、管理措施，及时发现并消除事故隐患。事故隐患排查治理情况应当如实记录，并向从业人员通报。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建立健全重大事故隐患治理督办制度，督促生产经营单位消除重大事故隐患。  第三十九条 生产、经营、储存、使用危险物品的车间、商店、仓库不得与员工宿舍在同一座建筑物内，并应当与员工宿舍保持安全距离。  生产经营场所和员工宿舍应当设有符合紧急疏散要求、标志明显、保持畅通的出口。禁止锁闭、封堵生产经营场所或者员工宿舍的出口。  第四十条 生产经营单位进行爆破、吊装以及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的其他危险作业，应当安排专门人员进行现场安全管理，确保操作规程的遵守和安全措施的落实。  第四十一条 生产经营单位应当教育和督促从业人员严格执行本单位的安全生产规章制度和安全操作规程；并向从业人员如实告知作业场所和工作岗位存在的危险因素、防范措施以及事故应急措施。  第四十二条 生产经营单位必须为从业人员提供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劳动防护用品，并监督、教育从业人员按照使用规则佩戴、使用。  第四十三条 生产经营单位的安全生产管理人员应当根据本单位的生产经营特点，对安全生产状况进行经常性检查；对检查中发现的安全问题，应当立即处理；不能处理的，应当及时报告本单位有关负责人，有关负责人应当及时处理。检查及处理情况应当如实记录在案。  生产经营单位的安全生产管理人员在检查中发现重大事故隐患，依照前款规定向本单位有关负责人报告，有关负责人不及时处理的，安全生产管理人员可以向主管的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报告，接到报告的部门应当依法及时处理。  第四十四条 生产经营单位应当安排用于配备劳动防护用品、进行安全生产培训的经费。  第四十五条 两个以上生产经营单位在同一作业区域内进行生产经营活动，可能危及对方生产安全的，应当签订安全生产管理协议，明确各自的安全生产管理职责和应当采取的安全措施，并指定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进行安全检查与协调。  第四十六条 生产经营单位不得将生产经营项目、场所、设备发包或者出租给不具备安全生产条件或者相应资质的单位或者个人。  生产经营项目、场所发包或者出租给其他单位的，生产经营单位应当与承包单位、承租单位签订专门的安全生产管理协议，或者在承包合同、租赁合同中约定各自的安全生产管理职责；生产经营单位对承包单位、承租单位的安全生产工作统一协调、管理，定期进行安全检查，发现安全问题的，应当及时督促整改。  第四十七条 生产经营单位发生生产安全事故时，单位的主要负责人应当立即组织抢救，并不得在事故调查处理期间擅离职守。  第四十八条 生产经营单位必须依法参加工伤保险，为从业人员缴纳保险费。  国家鼓励生产经营单位投保安全生产责任保险。  第三章 从业人员的安全生产权利义务  第四十九条 生产经营单位与从业人员订立的劳动合同，应当载明有关保障从业人员劳动安全、防止职业危害的事项，以及依法为从业人员办理工伤保险的事项。  生产经营单位不得以任何形式与从业人员订立协议，免除或者减轻其对从业人员因生产安全事故伤亡依法应承担的责任。  第五十条 生产经营单位的从业人员有权了解其作业场所和工作岗位存在的危险因素、防范措施及事故应急措施，有权对本单位的安全生产工作提出建议。  第五十一条 从业人员有权对本单位安全生产工作中存在的问题提出批评、检举、控告；有权拒绝违章指挥和强令冒险作业。  生产经营单位不得因从业人员对本单位安全生产工作提出批评、检举、控告或者拒绝违章指挥、强令冒险作业而降低其工资、福利等待遇或者解除与其订立的劳动合同。  第五十二条 从业人员发现直接危及人身安全的紧急情况时，有权停止作业或者在采取可能的应急措施后撤离作业场所。  生产经营单位不得因从业人员在前款紧急情况下停止作业或者采取紧急撤离措施而降低其工资、福利等待遇或者解除与其订立的劳动合同。  第五十三条 因生产安全事故受到损害的从业人员，除依法享有工伤保险外，依照有关民事法律尚有获得赔偿的权利的，有权向本单位提出赔偿要求。  第五十四条 从业人员在作业过程中，应当严格遵守本单位的安全生产规章制度和操作规程，服从管理，正确佩戴和使用劳动防护用品。  第五十五条 从业人员应当接受安全生产教育和培训，掌握本职工作所需的安全生产知识，提高安全生产技能，增强事故预防和应急处理能力。  第五十六条 从业人员发现事故隐患或者其他不安全因素，应当立即向现场安全生产管理人员或者本单位负责人报告；接到报告的人员应当及时予以处理。  第五十七条 工会有权对建设项目的安全设施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生产和使用进行监督，提出意见。  工会对生产经营单位违反安全生产法律、法规，侵犯从业人员合法权益的行为，有权要求纠正；发现生产经营单位违章指挥、强令冒险作业或者发现事故隐患时，有权提出解决的建议，生产经营单位应当及时研究答复；发现危及从业人员生命安全的情况时，有权向生产经营单位建议组织从业人员撤离危险场所，生产经营单位必须立即作出处理。  工会有权依法参加事故调查，向有关部门提出处理意见，并要求追究有关人员的责任。  第五十八条 生产经营单位使用被派遣劳动者的，被派遣劳动者享有本法规定的从业人员的权利，并应当履行本法规定的从业人员的义务。  第四章 安全生产的监督管理  第五十九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本行政区域内的安全生产状况，组织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对本行政区域内容易发生重大生产安全事故的生产经营单位进行严格检查。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分类分级监督管理的要求，制定安全生产年度监督检查计划，并按照年度监督检查计划进行监督检查，发现事故隐患，应当及时处理。  第六十条 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对涉及安全生产的事项需要审查批准（包括批准、核准、许可、注册、认证、颁发证照等，下同）或者验收的，必须严格依照有关法律、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规定的安全生产条件和程序进行审查；不符合有关法律、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规定的安全生产条件的，不得批准或者验收通过。对未依法取得批准或者验收合格的单位擅自从事有关活动的，负责行政审批的部门发现或者接到举报后应当立即予以取缔，并依法予以处理。对已经依法取得批准的单位，负责行政审批的部门发现其不再具备安全生产条件的，应当撤销原批准。  第六十一条 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对涉及安全生产的事项进行审查、验收，不得收取费用；不得要求接受审查、验收的单位购买其指定品牌或者指定生产、销售单位的安全设备、器材或者其他产品。  第六十二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其他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开展安全生产行政执法工作，对生产经营单位执行有关安全生产的法律、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情况进行监督检查，行使以下职权：  （一）进入生产经营单位进行检查，调阅有关资料，向有关单位和人员了解情况；  （二）对检查中发现的安全生产违法行为，当场予以纠正或者要求限期改正；对依法应当给予行政处罚的行为，依照本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作出行政处罚决定；  （三）对检查中发现的事故隐患，应当责令立即排除；重大事故隐患排除前或者排除过程中无法保证安全的，应当责令从危险区域内撤出作业人员，责令暂时停产停业或者停止使用相关设施、设备；重大事故隐患排除后，经审查同意，方可恢复生产经营和使用；  （四）对有根据认为不符合保障安全生产的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设施、设备、器材以及违法生产、储存、使用、经营、运输的危险物品予以查封或者扣押，对违法生产、储存、使用、经营危险物品的作业场所予以查封，并依法作出处理决定。  监督检查不得影响被检查单位的正常生产经营活动。  第六十三条 生产经营单位对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的监督检查人员（以下统称安全生产监督检查人员）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挠。  第六十四条 安全生产监督检查人员应当忠于职守，坚持原则，秉公执法。  安全生产监督检查人员执行监督检查任务时，必须出示有效的监督执法证件；对涉及被检查单位的技术秘密和业务秘密，应当为其保密。  第六十五条 安全生产监督检查人员应当将检查的时间、地点、内容、发现的问题及其处理情况，作出书面记录，并由检查人员和被检查单位的负责人签字；被检查单位的负责人拒绝签字的，检查人员应当将情况记录在案，并向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报告。  第六十六条 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在监督检查中，应当互相配合，实行联合检查；确需分别进行检查的，应当互通情况，发现存在的安全问题应当由其他有关部门进行处理的，应当及时移送其他有关部门并形成记录备查，接受移送的部门应当及时进行处理。  第六十七条 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对存在重大事故隐患的生产经营单位作出停产停业、停止施工、停止使用相关设施或者设备的决定，生产经营单位应当依法执行，及时消除事故隐患。生产经营单位拒不执行，有发生生产安全事故的现实危险的，在保证安全的前提下，经本部门主要负责人批准，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可以采取通知有关单位停止供电、停止供应民用爆炸物品等措施，强制生产经营单位履行决定。通知应当采用书面形式，有关单位应当予以配合。  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照前款规定采取停止供电措施，除有危及生产安全的紧急情形外，应当提前二十四小时通知生产经营单位。生产经营单位依法履行行政决定、采取相应措施消除事故隐患的，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及时解除前款规定的措施。  第六十八条 监察机关依照行政监察法的规定，对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及其工作人员履行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实施监察。  第六十九条 承担安全评价、认证、检测、检验的机构应当具备国家规定的资质条件，并对其作出的安全评价、认证、检测、检验的结果负责。  第七十条 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建立举报制度，公开举报电话、信箱或者电子邮件地址，受理有关安全生产的举报；受理的举报事项经调查核实后，应当形成书面材料；需要落实整改措施的，报经有关负责人签字并督促落实。  第七十一条 任何单位或者个人对事故隐患或者安全生产违法行为，均有权向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报告或者举报。  第七十二条 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发现其所在区域内的生产经营单位存在事故隐患或者安全生产违法行为时，应当向当地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报告。  第七十三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报告重大事故隐患或者举报安全生产违法行为的有功人员，给予奖励。具体奖励办法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制定。  第七十四条 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等单位有进行安全生产公益宣传教育的义务，有对违反安全生产法律、法规的行为进行舆论监督的权利。  第七十五条 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建立安全生产违法行为信息库，如实记录生产经营单位的安全生产违法行为信息；对违法行为情节严重的生产经营单位，应当向社会公告，并通报行业主管部门、投资主管部门、国土资源主管部门、证券监督管理机构以及有关金融机构。  第五章 生产安全事故的应急救援与调查处理  第七十六条 国家加强生产安全事故应急能力建设，在重点行业、领域建立应急救援基地和应急救援队伍，鼓励生产经营单位和其他社会力量建立应急救援队伍，配备相应的应急救援装备和物资，提高应急救援的专业化水平。  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建立全国统一的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信息系统，国务院有关部门建立健全相关行业、领域的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信息系统。  第七十七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制定本行政区域内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建立应急救援体系。  第七十八条 生产经营单位应当制定本单位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与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制定的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相衔接，并定期组织演练。  第七十九条 危险物品的生产、经营、储存单位以及矿山、金属冶炼、城市轨道交通运营、建筑施工单位应当建立应急救援组织；生产经营规模较小的，可以不建立应急救援组织，但应当指定兼职的应急救援人员。  危险物品的生产、经营、储存、运输单位以及矿山、金属冶炼、城市轨道交通运营、建筑施工单位应当配备必要的应急救援器材、设备和物资，并进行经常性维护、保养，保证正常运转。  第八十条 生产经营单位发生生产安全事故后，事故现场有关人员应当立即报告本单位负责人。  单位负责人接到事故报告后，应当迅速采取有效措施，组织抢救，防止事故扩大，减少人员伤亡和财产损失，并按照国家有关规定立即如实报告当地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不得隐瞒不报、谎报或者迟报，不得故意破坏事故现场、毁灭有关证据。  第八十一条 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接到事故报告后，应当立即按照国家有关规定上报事故情况。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和有关地方人民政府对事故情况不得隐瞒不报、谎报或者迟报。  第八十二条 有关地方人民政府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的负责人接到生产安全事故报告后，应当按照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的要求立即赶到事故现场，组织事故抢救。  参与事故抢救的部门和单位应当服从统一指挥，加强协同联动，采取有效的应急救援措施，并根据事故救援的需要采取警戒、疏散等措施，防止事故扩大和次生灾害的发生，减少人员伤亡和财产损失。  事故抢救过程中应当采取必要措施，避免或者减少对环境造成的危害。  任何单位和个人都应当支持、配合事故抢救，并提供一切便利条件。  第八十三条 事故调查处理应当按照科学严谨、依法依规、实事求是、注重实效的原则，及时、准确地查清事故原因，查明事故性质和责任，总结事故教训，提出整改措施，并对事故责任者提出处理意见。事故调查报告应当依法及时向社会公布。事故调查和处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制定。  事故发生单位应当及时全面落实整改措施，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加强监督检查。  第八十四条 生产经营单位发生生产安全事故，经调查确定为责任事故的，除了应当查明事故单位的责任并依法予以追究外，还应当查明对安全生产的有关事项负有审查批准和监督职责的行政部门的责任，对有失职、渎职行为的，依照本法第八十七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  第八十五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挠和干涉对事故的依法调查处理。  第八十六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定期统计分析本行政区域内发生生产安全事故的情况，并定期向社会公布。  第六章 法律责任  第八十七条 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给予降级或者撤职的处分；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一）对不符合法定安全生产条件的涉及安全生产的事项予以批准或者验收通过的；  （二）发现未依法取得批准、验收的单位擅自从事有关活动或者接到举报后不予取缔或者不依法予以处理的；  （三）对已经依法取得批准的单位不履行监督管理职责，发现其不再具备安全生产条件而不撤销原批准或者发现安全生产违法行为不予查处的；  （四）在监督检查中发现重大事故隐患，不依法及时处理的。  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的工作人员有前款规定以外的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第八十八条 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要求被审查、验收的单位购买其指定的安全设备、器材或者其他产品的，在对安全生产事项的审查、验收中收取费用的，由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责令退还收取的费用；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八十九条 承担安全评价、认证、检测、检验工作的机构，出具虚假证明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在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二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十万元的，单处或者并处十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给他人造成损害的，与生产经营单位承担连带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对有前款违法行为的机构，吊销其相应资质。  第九十条 生产经营单位的决策机构、主要负责人或者个人经营的投资人不依照本法规定保证安全生产所必需的资金投入，致使生产经营单位不具备安全生产条件的，责令限期改正，提供必需的资金；逾期未改正的，责令生产经营单位停产停业整顿。  有前款违法行为，导致发生生产安全事故的，对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给予撤职处分，对个人经营的投资人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第九十一条 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未履行本法规定的安全生产管理职责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二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责令生产经营单位停产停业整顿。  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有前款违法行为，导致发生生产安全事故的，给予撤职处分；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依照前款规定受刑事处罚或者撤职处分的，自刑罚执行完毕或者受处分之日起，五年内不得担任任何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对重大、特别重大生产安全事故负有责任的，终身不得担任本行业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  第九十二条 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未履行本法规定的安全生产管理职责，导致发生生产安全事故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  （一）发生一般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百分之三十的罚款；  （二）发生较大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百分之四十的罚款；  （三）发生重大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百分之六十的罚款；  （四）发生特别重大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百分之八十的罚款。  第九十三条 生产经营单位的安全生产管理人员未履行本法规定的安全生产管理职责的，责令限期改正；导致发生生产安全事故的，暂停或者撤销其与安全生产有关的资格；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第九十四条 生产经营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并处五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  （一）未按照规定设置安全生产管理机构或者配备安全生产管理人员的；  （二）危险物品的生产、经营、储存单位以及矿山、金属冶炼、建筑施工、道路运输单位的主要负责人和安全生产管理人员未按照规定经考核合格的；  （三）未按照规定对从业人员、被派遣劳动者、实习学生进行安全生产教育和培训，或者未按照规定如实告知有关的安全生产事项的；  （四）未如实记录安全生产教育和培训情况的；  （五）未将事故隐患排查治理情况如实记录或者未向从业人员通报的；  （六）未按照规定制定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或者未定期组织演练的；  （七）特种作业人员未按照规定经专门的安全作业培训并取得相应资格，上岗作业的。  第九十五条 生产经营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停止建设或者停产停业整顿，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五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一）未按照规定对矿山、金属冶炼建设项目或者用于生产、储存、装卸危险物品的建设项目进行安全评价的；  （二）矿山、金属冶炼建设项目或者用于生产、储存、装卸危险物品的建设项目没有安全设施设计或者安全设施设计未按照规定报经有关部门审查同意的；  （三）矿山、金属冶炼建设项目或者用于生产、储存、装卸危险物品的建设项目的施工单位未按照批准的安全设施设计施工的；  （四）矿山、金属冶炼建设项目或者用于生产、储存危险物品的建设项目竣工投入生产或者使用前，安全设施未经验收合格的。  第九十六条 生产经营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改正的，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整顿；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一）未在有较大危险因素的生产经营场所和有关设施、设备上设置明显的安全警示标志的；  （二）安全设备的安装、使用、检测、改造和报废不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  （三）未对安全设备进行经常性维护、保养和定期检测的；  （四）未为从业人员提供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劳动防护用品的；  （五）危险物品的容器、运输工具，以及涉及人身安全、危险性较大的海洋石油开采特种设备和矿山井下特种设备未经具有专业资质的机构检测、检验合格，取得安全使用证或者安全标志，投入使用的；  （六）使用应当淘汰的危及生产安全的工艺、设备的。  第九十七条 未经依法批准，擅自生产、经营、运输、储存、使用危险物品或者处置废弃危险物品的，依照有关危险物品安全管理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第九十八条 生产经营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可以处十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并处十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一）生产、经营、运输、储存、使用危险物品或者处置废弃危险物品，未建立专门安全管理制度、未采取可靠的安全措施的；  （二）对重大危险源未登记建档，或者未进行评估、监控，或者未制定应急预案的；  （三）进行爆破、吊装以及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的其他危险作业，未安排专门人员进行现场安全管理的；  （四）未建立事故隐患排查治理制度的。  第九十九条 生产经营单位未采取措施消除事故隐患的，责令立即消除或者限期消除；生产经营单位拒不执行的，责令停产停业整顿，并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条 生产经营单位将生产经营项目、场所、设备发包或者出租给不具备安全生产条件或者相应资质的单位或者个人的，责令限期改正，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二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十万元的，单处或者并处十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导致发生生产安全事故给他人造成损害的，与承包方、承租方承担连带赔偿责任。  生产经营单位未与承包单位、承租单位签订专门的安全生产管理协议或者未在承包合同、租赁合同中明确各自的安全生产管理职责，或者未对承包单位、承租单位的安全生产统一协调、管理的，责令限期改正，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一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  第一百零一条 两个以上生产经营单位在同一作业区域内进行可能危及对方安全生产的生产经营活动，未签订安全生产管理协议或者未指定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进行安全检查与协调的，责令限期改正，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一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改正的，责令停产停业。  第一百零二条 生产经营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一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一）生产、经营、储存、使用危险物品的车间、商店、仓库与员工宿舍在同一座建筑内，或者与员工宿舍的距离不符合安全要求的；  （二）生产经营场所和员工宿舍未设有符合紧急疏散需要、标志明显、保持畅通的出口，或者锁闭、封堵生产经营场所或者员工宿舍出口的。  第一百零三条 生产经营单位与从业人员订立协议，免除或者减轻其对从业人员因生产安全事故伤亡依法应承担的责任的，该协议无效；对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个人经营的投资人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四条 生产经营单位的从业人员不服从管理，违反安全生产规章制度或者操作规程的，由生产经营单位给予批评教育，依照有关规章制度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第一百零五条 违反本法规定，生产经营单位拒绝、阻碍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实施监督检查的，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第一百零六条 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在本单位发生生产安全事故时，不立即组织抢救或者在事故调查处理期间擅离职守或者逃匿的，给予降级、撤职的处分，并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处上一年年收入百分之六十至百分之一百的罚款；对逃匿的处十五日以下拘留；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对生产安全事故隐瞒不报、谎报或者迟报的，依照前款规定处罚。  第一百零七条 有关地方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对生产安全事故隐瞒不报、谎报或者迟报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第一百零八条 生产经营单位不具备本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规定的安全生产条件，经停产停业整顿仍不具备安全生产条件的，予以关闭；有关部门应当依法吊销其有关证照。  第一百零九条 发生生产安全事故，对负有责任的生产经营单位除要求其依法承担相应的赔偿等责任外，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  （一）发生一般事故的，处二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二）发生较大事故的，处五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  （三）发生重大事故的，处一百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  （四）发生特别重大事故的，处五百万元以上一千万元以下的罚款；情节特别严重的，处一千万元以上二千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一十条 本法规定的行政处罚，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其他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按照职责分工决定。予以关闭的行政处罚由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报请县级以上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决定；给予拘留的行政处罚由公安机关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决定。  第一百一十一条 生产经营单位发生生产安全事故造成人员伤亡、他人财产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拒不承担或者其负责人逃匿的，由人民法院依法强制执行。  生产安全事故的责任人未依法承担赔偿责任，经人民法院依法采取执行措施后，仍不能对受害人给予足额赔偿的，应当继续履行赔偿义务；受害人发现责任人有其他财产的，可以随时请求人民法院执行。  第七章 附 则  第一百一十二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危险物品，是指易燃易爆物品、危险化学品、放射性物品等能够危及人身安全和财产安全的物品。  重大危险源，是指长期地或者临时地生产、搬运、使用或者储存危险物品，且危险物品的数量等于或者超过临界量的单元（包括场所和设施）。  第一百一十三条 本法规定的生产安全一般事故、较大事故、重大事故、特别重大事故的划分标准由国务院规定。  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其他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根据各自的职责分工，制定相关行业、领域重大事故隐患的判定标准。  第一百一十四条 本法自2002年11月1日起施行。 |